

국 민 안 전 처

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 소하천 사업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횡성군

내 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¹¹¹⁾을 점검·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
이에 근거하여 강원도 횡성군청 ○○○○과에서는 2015년 4월 13일 강원도 ○○시 ○○로 0000번길 00 0층(○○동)에 소재한 (주)○○○○과 도급계약(도급액 726,868천원)을 체결하여 “○○소하천 정비사업”을 추진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, 2016. 1. 19. 시행)」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·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,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1. 도면과 다르게 교량 동바리 설치

교량공 동바리 설치 시 당초 도면과 상이하게 실제 시공시 토사 1.9m 성토 후 동바리를 시공하여 설치 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시공 수량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22,569천원(제경비 포함) 차액이 발생하였다.

111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
2. 돌망태 헐기 자재 유용자재로 미 반영

돌망태 헐기 시 발생한 잡석 486m³의 50%는 현장자재로 유용¹¹²⁾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8,241천원(제경비 포함)이 과다 계상되었다.

[표] ○○ 소하천 정비사업 감액 내역

(단위 : 천원)

공 종	설계반영 (제경비 제외)		변경(B) (제경비 포함)		감액 (제경비 포함)		감액사유	비고
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	
계		163,555		132,745		30,810		
동바리	1,313	40,013	893	17,444	420	22,569	정산	
골재	4,935	123,542	4,692	115,301	243	8,241	과다 계상	유용

조치할 사항 횡성군수는

○○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30,810천원을 감액조치 하시고,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112) 돌망태 헐기에서 발생한 잡석은 실제 시공현장에서 호안공 뒷채움재로 유용